[별지 제1호 서식]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예운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예운학원(성운대학교)의 2024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5년 0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예운학원(성운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예운학원(성운대학교)의 2025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

2025년 04월 28일

학교법인 예운학원
감사 도형집 (인)

감사 이재웅 (인)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예운학원 이사
성명 이경재 (인)

직명 행정지원처장
성명 박만성 (인)

[별지 제2호 서식]

학교법인 예운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4회계연도 2024 년 3월 1일부터 2025 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1.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등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법정 확보율 및 수익률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법정 기준에 미달함. 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100.0%) 미충족 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3.46%) 미충족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1.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에 따른 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임. 나. 수익사업회계의 수익 증대방안을 여러방면으로 강구 중이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료 증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예운학원 이사장 지 홍 원 (인)

[별지 제3호 서식]

성운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4회계연도 2024 년 3월 1일부터 2025 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피감사기관장 성운대학교 총장 윤 지 현 직인 (사인)